

제 호

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

명 칭

수 량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53조에 따라
위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재청장 직인

소유자	주 소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	기록자
(변 경 사 항)				
소유자	주 소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변 경 연 월 일	기록자

주의사항

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「문화재보호법」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1.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2.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
3.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

※ 1쪽 왼쪽 상단의 '제 호' 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.(표기예시: 제2022-001호)